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132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은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4. 10. 8.

**판결 선고** 2024. 12. 3.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8.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218,0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18,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2016. 4. 23.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 2) C은 2017. 4. 15.경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
- 3) 원고는 2023. 9. 8.경 소외 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3. 11. 8.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4) 2024. 3. 21.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은 12,218,027원(= 원금 5,154,832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063,195원)이다.

####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아버지인 E은 2023. 8. 4.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F, C이 있다.
- 2) 피고, F, C은 2023. 8. 4.경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2024.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23.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2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4. 3. 18.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증명 촉구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물반환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2) 2023. 3.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3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24. 3. 21.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이 12,218,02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218,0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2,218,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희현**

별지